

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

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신규 고용과 지속 고용을 위한 「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의 모집공고를 안내드립니다.

2024년 08월 05일

1 사업목적

- ☐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인력 문제 해결 및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, 지역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

2 모집 및 지원내용

- ☐ 사 업 명 :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
- ☐ 프로그램

프로그램명	모집인원	비고
① 자동차부품산업 취업자 채용 지원금	170명	근로자 대상
② 자동차부품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	155명	기업 대상

※ 기업 당 2개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

※ 모집인원은 사업기간(24.04.25~24.12.31.) 내 모집인원이며, [선착순모집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음](#)

□ (지원프로그램별 지원내용)

※ 지원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은 '상세안내문' 파일을 필히 참고

① 프로그램명 : 자동차부품산업 취업자 채움 지원금

○ 지원대상

-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2024.04.25.일 이후 취업한 근로자
 - (거주지) 사업참여신청 시 대구 주민등록자(외국인제외)
 - (나 이) 15세 이상 59세 미만(24.04.25.기준)
 - (취업처) 대구지역 사업장을 둔 자동차부품 기업 및 협약기업 협력사
 - (취업일자) 24.04.25.부터 24.09.20.이내에 취업한 근로자
- ※ '24년 4월 25일 취업 이후 3개월 고용 유지자(생산직, 관리직, 연구직 등)
- ※ 자동차부품제조업(C30)+기타업종(협약기업 협력사 한정) *제조업 500인 이하
- ※ 협약기업 : 현대기아

○ 지원내용 :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, 6개월차 100만원 지원(최대 200만원)

② 프로그램명 : 자동차부품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

○ 지원대상

-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대구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및 협약기업 협력사
 - (기업규모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의 사업주
 - (나 이) 35세 이상 59세 미만 (24.04.25.기준) 정규직 근로자
 - (취업일자) 2024.04.25. 이후 신규 채용자
 - (임금수준) 최저임금(야근수당 등 제외) 120%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(고용보험 가입 필수)
- ※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된 근로자 (생산직, 관리직, 연구직 등)
- ※ 채용일자: 24.04.25.부터 24.08.31.이내에 채용 된 근로자
- (지 역) 대구 지역 사업장을 보유한 자동차부품제조 기업(C30) 및
기타업종 (협약기업 협력사 한정)
- ※ 협약기업 : 현대기아

○ 지원내용 :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(최대 600만원)

3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08.05.(월) ~ 2024.08.30.(토)
- 신청방법 : Email 접수(선착순) / joo@kiapi.or.kr
- 문 의 처 : 기업지원본부 기업협력팀

이진원 팀장 053-615-7610, 주용환 주임 053-615-7612

4 제출서류

① 프로그램명 : 자동차부품산업 취업자 채용 지원금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- 채용지원금 참여 신청서	
	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	
	- 참여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	
	- 지원금 신청서	
	- 신청인 주민등록초본(신청일 기준, 병역사항 기재)	
	- 재직증명서	
	- 신청인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	
	-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	해당 시
	-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C30	
	- 현대·기아 1, 2, 3 차 협력사 납품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	
선택	- 디잡스 아카데미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수료증 1부	해당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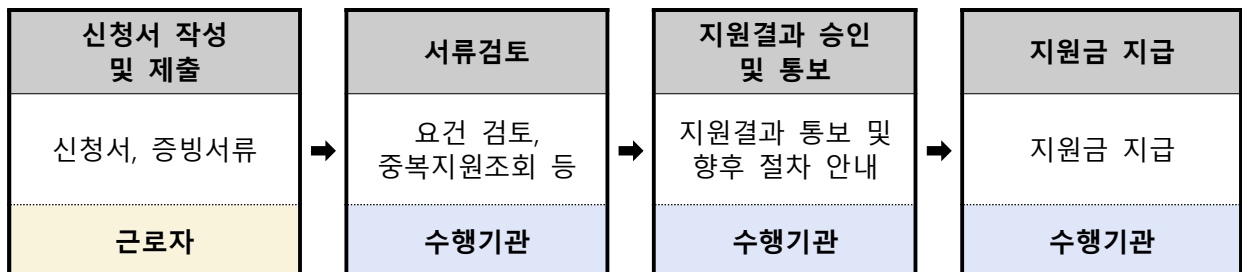
② 프로그램명 : 자동차부품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	-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신청서	
	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참여자)	
	- 사업자등록증 사본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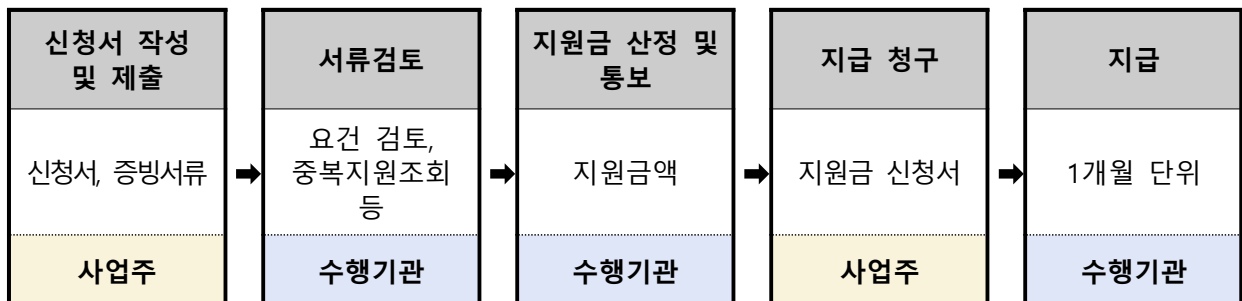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	비고
	- 기업명의 통장사본	
	-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또는 고용산재보험서비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	
	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참여 신청시 발급본)	
	- 참여자 근로계약서 사본,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, 임금 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, 임금내역 등)	
	- (기채용자 있는 경우) [서식3] 정규직 채용(전환)자 명단통보서	
	-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C30	
	- 현대·기아 협력사 납품증명서 등	
선택	- 디잡스 아카데미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	해당 시

5 지원절차

① 프로그램명 : 자동차부품산업 취업자 채움 지원금



② 프로그램명 : 자동차부품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



6 유의사항

- 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게 개별통보)
- ☐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하며,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결격처리 될 수 있음
- ☐ 이메일 접수 후 지원기관 담당자와 누락서류가 없는 지 사전 협의 권장
- ☐ 지원제외 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시 추후 반환 조치가 될 수 있음

※ 지원제외 대상 (접수마감일 기준)

○ 지원제외 기업

- ①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※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년도에 공표 중인 기업
※ (확인 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보험법」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
- ④ 국세·지방세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기업
-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
○ 지원제외 대상

- ①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
※ 혼인 등으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,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제한
- ②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
- ③ 국내기업의 해외법인(또는 해외지사)의 근무(예정)자로 채용된 자
- ④ 근무시간,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·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
※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택근무자 포함
- ⑤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(채용일 이전 1년에 한함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※ 단,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
- ⑥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- ⑦ 외국인 근로자

7 붙임 문서

붙임 1. 지원프로그램 상세안내문

붙임 2. 취업자 채용지원금 관련서식

붙임 3. 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서식. 끝.